



지방자치 정책 Brief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김성주 연구위원

주요내용

성과관리의 한계가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

- 2016년도 결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다음 해의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청이나 지원청, 각급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목적인 바 및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

교육자치에 따른 한 지역 두 기관 자치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된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는 교육자치에 따라 한 지역, 같은 주민에 대해 두 개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각자 행정을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과세권이 없고 지출권만 있다 보니, 세입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함에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도 자체 회계시스템이나 감사를 받고 있음에 따라 전체 공공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는 취약한 부분임
-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성과평가는 물론 숫자적 정산 외에 구체적 지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교육기관 보조금이나 공동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성과 관리가 필요함

공공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의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사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 또한 사후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 제4항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임의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학교 등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쪼개진 사업으로 인해 좀 더 큰 목적의 효과적인 지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 교육청의 자체사업(교육과정 등 고유의 교육청 사업 제외) 등에 대한 사전, 사후 사업내용 및 지출자료 공유가 요구됨

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는 법률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정해지는 법정전출금과 법률에 전출 근거는 있으나 규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규모가 정해지는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뉘어짐
-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통계목상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교육기관에 지출되는 보조금 즉, 비법정전출금을 의미함

법정전출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내역

구분	부담금	근거법령
광역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운영비	「도서관법」 제29조 제2,3항
	학교 급식비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기타 교육지원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
	교육경비보조금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비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교육경비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자료: 하봉운(2022), '교육청-타분야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방안' 일부 수정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비법정전출금)의 추이

-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과 비법정전출금의 결산액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약 12조원 규모에서 2018년 16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약 14조원으로 매년 등락은 있으나 단기간에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비법정전출금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9년과 2020년에는 전체 전출금 중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비법정 전출금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비중		비중
2020	14,156,109	12,622,275	(89.2)	1,533,834	(10.8)
2019	13,928,549	12,256,805	(88.0)	1,671,744	(12.0)
2018	16,261,645	14,989,603	(92.2)	1,272,043	(7.8)
2017	12,921,887	11,821,052	(91.5)	1,100,836	(8.5)
2016	11,914,161	11,037,487	(92.6)	876,674	(7.4)

주: 각 년도 결산 기준

자료: 지방재정365)교육비특별회계

02

성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



성과관리의 한계가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

- 2016년도 결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다음 해의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청이나 지원청, 각급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목적한 바 및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

(□□시의 교육담당자)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 보조금 등 재원부담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고, 교육경비 보조금과 혼용 사용 시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의 교육담당자)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의 경우 교육청에서 정산하여 보내온 정산서에 대한 숫자적 확인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별 정산 내용을 건별로 확인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여 재원별 사업 추진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면 연차별 사업관리와 사업 추진 과정의 중간 점검 및 정산 확인이 편리할 것입니다.”

- ○○군에서도 광역지자체에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협력지구사업은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없이 교육청이 단독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보조금 지급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사업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음



교육자치에 따른 한 지역 두 기관 자치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된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는 교육자치제도에 따라 한 지역, 같은 주민에 대해 두 개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각자 행정을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과세권이 없고 지출권만 있다 보니, 세입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함에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사업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일반 재정사업이나 보조사업과는 달리 또 한편의 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기관인 교육청에 관련 서류나 결과물 등의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없음
-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도 자체 회계시스템이나 감사를 받고 있음에 따라 전체 공공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점에서는 취약한 부분임

- 이상과 같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성과평가는 물론 숫자적 정산 외에 구체적 지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교육기관 보조금이나 공동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성과관리가 필요함

03

교육기관 보조금의 성과관리 방향

- 공공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의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주요재정사업, 민간위탁사업,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 또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임에 따라 반드시 사후 성과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국민과 지방 주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예산을 쓴 효과는 있었는지, 다음 해의 사업에는 어떠한 내용을 환류시킬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221호) 제28조 제4항에서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택적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서로 다른 집행기준, 비슷한 목적의 다수 사업 등 교육사업 경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자치를 하고 있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에 예산 전출 의무가 있고, 교육기관 사업에 대해 적게는 지방세의 10% 많게는 30%까지 보조토록 하고 있지만, 집행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서로의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비슷한 목적의 다수 사업 문제가 있음
 - 이에 학교 등 예산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쪼개진 사업으로 인해 좀 더 큰 목적의 효과적인 지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 교육청의 자체사업(교육과정 등 고유의 교육청 사업 제외) 등에 대한 사업내용 공유가 요구됨

참고문헌

하봉운(2022) 교육청-타분야 공동사업비제도 운영방안. 부산시교육청 전문가토론회 발제자료.
지방재정 365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내용문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연구위원(033-769-9874, sjkim@krila.re.kr)

지난호
보기